

강엘리사벳 학술연구기금 운영규정

총 칙

제1조 (명칭) 본 기금은 “강엘리사벳 학술연구기금”이라 칭한다.

제2조 (주소) 본 기금은 가톨릭대학교 안에 그 본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규정은 기금 기증자인 강성남(엘리사벳) 여사의 후의에 의해 조성된 ‘강엘리사벳 학술연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가톨릭 신학과 철학 및 관련 인문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톨릭 사상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인간 존중’의 사상을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금 및 운영범위) 본 기금의 원천은 강성남(엘리사벳) 여사가 기증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235번지 7호’에 자리잡고 있는 대지 355.8m²(107.63평)와 건물 883.55m²(267.27평)로서, 기금의 운영범위는 그 원천에서 생기는 과실금과 기타의 수입 이내로 한정한다.

제5조 (주요사업) 본 기금에서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가톨릭 학자들의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연구 지원
2. 가톨릭 신앙과 교회의 발전에 필요한 외국 서적들의 번역 사업 지원
3. 가톨릭 신학과 철학 관련 학회들의 학회 활동 지원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1장 기금 운영

제6조 (기금운영 주체) 기금 및 과실금의 관리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총괄한다.

제7조 (이사회 구성과 임기)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상임이사는 원칙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약간 명(5-6명)
5. 감사 1인

② 당연직이 아닌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직무)** ① 이사장은 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임기 동안 겸임하며, 이사회를 대표하고, 주요 지원사업을 총괄 추진하며, 년 1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기금의 원천이 되는 건물과 과실금 및 각종 문서들을 관리한다.
- ③ 총무이사는 연구비 신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비 신청서들을 심의한다.
- ④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각종 사업들을 심의한다.
- ⑤ 감사는 매년 기금 및 과실금의 사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 제9조 (이사회)**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연구계획의 신청 및 심사가 종료된 후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한다.
- ②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1.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입안 확정
 3. 각종 심사 결과들의 최종 확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운영이사회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학술연구지원

- 제10조 (연구지원 규모)** 주요 사업들의 연구 지원은 많은 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상한선을 원칙적으로 설정한다(단,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매년 2500만원까지).
 2. 저서나 번역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매년 2000만원까지).
 3.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매년 1500만원까지).

- 제11조 (지원 방법)** ① 본 기금의 지원 방법은 공개지원 연구와 위탁연구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학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 (연구비 지원 대상)** 가톨릭 신앙을 가진 학자로서 가톨릭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논문 또는 저술을 집필하거나, 가톨릭 학술 단체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 본 기금의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 (연구비 신청)** ① 학술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계획서

- 를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심의한다.
- ③ 저서(번역) 논문의 경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 결과물 제출 후 3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학술대회 경우에는 1년에 1회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조 (연구계획 심사) ① 총무이사는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3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연구비 신청서들을 심의·확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심사에서 고려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본 기금 목적과의 부합성
 2. 학술적 엄정성
 3. 연구비 산정의 적절성
 4. 다른 연구와의 중복성
 5.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 연구의 필요성
 6. 연구 결과의 예상 공헌도
 7. 연구 결과의 출판적합성
- ③ 심사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 (연구비 지급 방법) ① 논문과 저서 또는 역서의 경우에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제1차분으로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제출시에 지급한다.

- ②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연구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③ 선정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연구결과 평가) ① 저서나 번역의 경우, 연구자는 연구결과로서 완결된 최종 원고를 정식 출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이사에게 심사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출판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출판사의 사정 등으로 출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출판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사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실시한다.
- ③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들이 재차 심의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출간 승인 사실을 통보한다.
- ⑤ 연구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한다.
- ⑥ 심의 결과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조치를 취한다.
 - a) 일정 시한 내에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재차 심의한다.
 - b) 연구비의 나머지 5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c) 이미 지급되었던 50%의 연구비를 환수 조치한다.

- 제17조 (연구결과물의 출판)** ① 연구결과가 논문인 경우,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발표해야 하고, 학술지 원본과 논문 별쇄본 8부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저서나 역서인 경우, 연구자는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결과 평가절차를 거쳐, 연구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정식출판하고, 출판물 8부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 결과물에는 반드시 '본 논문은(또는 저[역]서, 또는 잡지는) 강엘리사벳 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정식으로 출판된 연구결과물 8부가 보고용으로 접수되었을 때, 나머지 50%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 ⑤ 저서나 역서의 출판은 가능한 한 일반 출판사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본 기금에서 출판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수혜자의 의무

- 제18조 (수혜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의 진행사항과 최종 원고 집필완료일이 명시된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전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연구결과가 제출되었거나, 제16조에 제시된 바에 따라 연구결과물의 평가를 위해 최종원고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은 면제된다.)
- ② 연구자는 제16조와 제17조에 제시된 연구결과물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저서나 역서의 경우, 출판사와 출판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인세, 원고료, 출판시기 등이 언급된 출판계약서를 즉시 총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결과물을 출판할 때에는 제17조 3항에서 규정하는 수혜 명기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⑤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기간, 연구 내용, 또는 실행 예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수혜자가 위의 제반 의무 조항들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비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 ⑦ 일반 관례에 따라 연구비 중복 수혜는 엄금한다(단, 출판사로부터 출판도서에 대한 소정의 '인세'를 받는 것은 연구비 중복 수혜로 보지 않는다). 나중이라도 이중 수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 (회계연도) 본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원) ① 기금은 강성남(엘리사벳) 여사가 기증한 건물을 그 원금으로 한다.

- ② 기금은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 기금의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인건비 등)을 향후 과실금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보 칙

제1조 (기증자 예우) 본 기금을 기증한 분에게는 가톨릭대학교 후원회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